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누105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redacted]

피고, 항소인 [redacted]군수

[redacted]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구단10357 판결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5.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4. 및 2016. 11. 7. 원고에게 한 [별지 1] 납세고지내역 기재 각 과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쪽 5행부터 4쪽 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9행의 "D 대 공장용지"를 "D 공장용지"로 고쳐 쓴다.

○ 2쪽 15행의 "취득세 등을"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로 고쳐 쓴다.

○ 2쪽 16행의 "재산세"를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3쪽 5행의 "확인되어" 뒤에 ", 원고는"을 추가한다.

○ 3쪽 아래에서 5행의 "취득세 등이"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로 고쳐 쓴다.

○ 3쪽 아래에서 4행의 "별지 1."부터 아래에서 2행의 "하였다."까지를 "취득세 · 재산세 등 301,838,120원[= 취득세 등 245,861,610원(가산세 포함) + 재산세 등 55,976,5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4쪽 아래에서 8행부터 5쪽 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2) 구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가 규정하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위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그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3)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에 갑 제11, 12, 19 내지 21호증, 을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쟁점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가 E 토지 중 이 사건 공장시설물을 설치한 4,262.4㎡ 부분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적어도 그 건축물에 부속하는 토지로서 원고의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중 위 4,262.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선박 등의 건조를 위해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공장부지면적에 공장입지기준고시에서 정한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1)]

② 쟁점토지와 E 토지는 이 사건 공장시설물을 좌측에 두고 연접하고 있고 출입구가 쟁점 토지 중 C 토지에만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쟁점 토지를 구입한 목적은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함이지 통로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원고는 당초 E 토지에 출입구를 설치할 계획이었던 점, E 토지에 출입구를 설치하는데 아무런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장입지기준고시 제3조 제1항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입지의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공장면적률이 곧바로 구 지특법 상 당해 부동산이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자 2014두3389 판결로 확정된 [redacted]고등법원 2014. 1. 13. 선고 ([redacted])2013누906 판결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법률상·사실상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 점, 쟁점 토지는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 상태인데다 이 사건 공장시설물에 이르는 통로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 토지 중 C 토지에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 토지가 이 사건 공장시설물에 부속하는 토지라거나, 이 사건 공장시설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에 약 34,648㎡(= 제조시설 32,448㎡ + 부대시설 2,200㎡) 규모의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이 사건 토지에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의 제조시설만이 설치되어 있다.[2] 만약 원고의 계획대로 위 시설물들이 설치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서 위 시설물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61.4%(=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의 면적 34,648㎡ / 이 사건 토지 면적 56,430.7㎡)에 이르러, 인근에서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들과 유사한 비율(41 ~ 65%)을 나타냈을 것이라는 점에서 쟁점 토지들은 당초 선박 등의 건조를 위해 구입되었지만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선박의 조립, 선행, 탑재, 도장의 경우 운송차량이나 크레인 등 중장비가 필요한데다가 지붕이 있을 필요가 없어 공장 외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선박을 보관할 공장 부지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원고의 경우 인근의 동종 영업을 하는 기업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큰 1,000톤 이상의 중소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회사여서 위 기업들보다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큰 톤수의 선박을 건조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도 공장부지에서 건물 등 시설

2) 이 사건 공장시설물의 연면적은 624㎡(이 사건 크레인의 경우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함)로서 이 사건 토지 면적의 불과 1.1%에 불과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크레인의 가동면적을 기준으로 연면적을 산정하더라도(4,262.4㎡) 이는 이 사건 토지 면적의 7.5% 수준에 불과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원고의 경우보다 더 높을 뿐 아니라, 쟁점 토지는 현재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쟁점 토지가 선박 보관을 위해 확보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원고가 쟁점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였고, 현재까지 다른 용도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토지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쟁점 토지에 객관적으로 선박 등의 건조를 위한 시설물이나 장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공장 시설물을 가동하지 못한 것이 조선업계의 불황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조세감면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요구하는 조세공평 원칙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별지 1]

납세고지내역

(단위: 원)

처분일자	세목	과세대상 / 연도	처 분 액
2016. 11. 4.	취 득 세	C	76,394,270 원
		D	90,483,530 원
		계	**166,877,800 원**
	지방교육세	C	7,048,850 원
		D	8,348,870 원
		계	**15,397,720 원**
	농어촌특별세	C	3,229,140 원
		D	3,824,700 원
		계	**7,053,840 원**
2016. 11. 7.	재 산 세	2013년	8,720,980 원
		2014년	8,925,890 원
		2015년	8,925,890 원
		2016년	9,348,520 원
		계	**35,921,280 원**
	지방교육세	2013년	1,744,200 원
		2014년	1,785,180 원
		2015년	1,785,180 원
		2016년	1,869,700 원
		계	**7,184,260 원**
합 계			**232,434,900 원**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별지 2]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13

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 12. 31. 행정자치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 제5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끝.